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2. 9.(목)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2005. 4. 1.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빠르면 12월말)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1.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4가지 졸업기준(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도입하는 한편,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SOC 투자법인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신설하고, '03. 3월말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출자에 대한 예외인정을 부활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신산업 등 출자의 경우 예외인정시한(최장 8년)을 폐지하였다.
2.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소속 금융사의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허용범위를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였다.
3. 금융(일반)지주회사가 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비금융(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을 신설하였으며, 부채비율(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에 대해 인정하였다. 그리고 비상장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였으며, 자회사간 출자금지,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원칙 금지 등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4. '04. 2월 시한만료 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되,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 한정하고, 요구권 발동시 공정위 의결을 의무화하며, 발동요건을 위반하여 정보를 요구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요구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였다.

5.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6. 공정위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 손해배상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의 발생은 확실하나 피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손해배상청구제도를 활성화하였다.
7.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하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적 심사는 강화하였다. 즉, 피취득 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자산총액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사후신고에서 기업결합완료 전 신고로 전환하며, 경쟁제한성이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연장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8. 카르텔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 하였다.
9. 국제카르텔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국내소비자 및 기업 등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동 대리인에게 문서를 송달하게 하는 등 문서 송달규정을 신설하였다.
10.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범위 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지 부록(59면 이하) 참조.



## 사전심사청구제 시행으로 위법여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심사청구제(事前審査請求制)'를 새로 도입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 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시행이 확정된 구체적·개별적 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 기속력이 없는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적응에 관한 사적 의견 제시 등)과는 다르다.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위법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며, 단, 장기간에 걸친 조사·시장분석 등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의 조사·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회답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적법하다고 회답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며, 다만, 청구인의 허위자료 제출, 중요자료 미제출 등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후조치가 가능한 한편, 청구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심사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하다.

심사결과는 청구인에게 회답하는 외에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활동 guide로 제공, 위법행위는 물론 적법(해도 좋은)행위까지 공개함으로써 동일(유사) 업종의 기업활동을 선도(先導)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사전심사청구)토록 해 자발적인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는 한편, 법 운용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시정의 문제점(기업 손실·법적 안전성 훼손 등)을 해소하며, 특히 민간법률 자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의 위반여부사전심사청구에관한운영지침(고시)」 전문은 본지 부록(82면 이하) 참조.



## 2004. 11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4년 11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4년 12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4년 11월중 17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11. 1. 313개에서 2004. 12. 1. 현재 319개로 6개사가 증가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4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12. 1. 현재 596개로 전월대비 1개사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5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4. 11월중 9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2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4. 12. 1. 현재 915개로 전월대비 7개사가 증가하였다.

### [2004. 11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4. 11. 1	편 입				제 외						증감	2004. 12.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7개)	313	-	5	2	7	1	-	-	-	-	1	6	319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1개)*	909	1	6	2	9	2	-	-	-	-	2	7	915

\* 17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포함

**[2004. 11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9개사(지분취득 : 6, 회사설립 : 1, 기타 : 2)

◆ 제외 : 2개사(합병 : 2)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엘 지	(주)씨에스리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지분 취득			
	(주)인터내셔널 텔레드림	"	"	-	-	-
	(주)테카스	"	"			
에 스 케 이	(주)아페론	실내건축공사업	"	-	-	-
금 호 아 시 아 나	한국복합물류(주)	창고, 보관, 복합운송주선업	"			
	호남복합물류(주)	"	기타	-	-	-
	(주)크로텍	화물차운송주선업	"			
하 나 로 통 신	(주)미디어홀딩스	방송 및 뉴미디어사 업	회사 설립	-	-	-
삼 양	(주)삼양웰푸드	식용유지 제조 및 판매업	지분 취득	-	-	-
현 대 자 동 차	-	-	-	현대상용엔진(주)	트럭 및 기타상용차 엔진 및 부품제조	합병
케 이 씨 씨	-	-	-	(주)이케이씨씨	전자상거래업	합병

\* 기업집단 「엘지」, 「롯데」의 계열사인 현대석유화학(주)가 대산열병합발전(유)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2개 집단의 계열사로 편입함